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 - 128호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전문분야(보건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2025년 제2회 전문분야(보건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직급	임용분야	근무예정기관	인 원	근무기간
한시임기제 8호	보건관리	안산우체국	1명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 ~ 2026. 4. 13.

※ 합격자 서류제출 등 시험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음

2 임용예정직무

임용분야	주요 업무
보건관리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해당 기관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 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등

※ 직무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p1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5. 5. 22.목)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 「붙임」 참조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 적: 대한민국(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나. 응시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5. 5. 22.목) 기준

구 분	직 급	응 시 요 건
보건관리	한시임기제 8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다. 우대 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5. 5. 9.금) 기준(적극적 서류전형에 한함)

구 분	요 건
경 력	o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소속직원의 보건관리(보건기획,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경력 **※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처치 등과 관련된 의료 경력은 제외**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자격증	o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 산업전문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자격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 자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우대요건 관련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담당 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예_주OO시간), 직급(직위) 등이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경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사업주)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 카드 등) 첨부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_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해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4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1. 소통 · 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 · 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 · 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 · 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일정	'25. 4. 29.(화) ~ 5. 9.(금)	'25. 5. 7.(수) ~ 5. 9.(금)	'25. 5. 16.(금)	'25. 5. 22.(목)	'25. 5. 30.(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문자 발송(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교부예정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의 채용공고란에 게시

7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5. 7.(수) ~ 5. 9.(금), 09:00~18:00
- 접 수 처: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채용담당
  (우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익일특급 등기우편)**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09:00 ~ 18:00(12:00~13:00 접수불가)
  ※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보건관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취소기간: '25. 5. 12. 18:00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이메일(bsb1220@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 '25. 5. 30. ~ '25. 6. 29.

8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병역 확인 불가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를 아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스테플러 사용금지)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필수 제출)	응시원서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초본(원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내역을 표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응시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서식 제8호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	○ 별지서식 제5호
	경력(재직)증명서(원본)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별지서식 제6호
	학위 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사본)	

9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 ~ 2026. 4. 13.**

  ※ 최종합격자의 임용서류 제출 등으로 근무기간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8호: 약 월 1,952,120원**(2025년 주 35시간 기준)

- 수　　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한시임기제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산재보험: 해당사항 없음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건강보험: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내,**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10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31-8014-3242, 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문은 우정사업본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gi),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명(선발예정인원)
보건관리	한시임기제 8호	안산우체국(1명)

주요 업무	○ 소속직원 보건관리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 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유해요인 조사 및 보건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필요 지식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식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지식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보건관리(보건기획,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자격증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경력)**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 등에서 소속 직원의 보건관리(보건기획, 보건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근무경력 ※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처치 등과 관련한 의료 경력은 제외** ※ 근무기간별 차등 배점 ○ **(자격증)**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 **산업전문간호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자격등급별 차등 배점

붙 임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분야 (근무예정기관)	직급	응시자격요건
※ 미기재		보건관리 (안산우체국)	한시임기제 8호	□ 자격증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목 록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원서	필수	□
2. 이력서	필수	□
3. 자기소개서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5. 응시요건상의 자격증 사본	필수	□
6. 주민등록초본(원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7.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 한	□
8.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	해당자 한	□
9.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사본)	해당자 한	□
10. 우대요건상의 자격증(사본)	해당자 한	□
1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표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경인지방우정청 주관 2025년 제2회 전문분야(보건관리)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응시번호	※ 미기재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보건관리)		(한자)	
채용예정관서	안산우체국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천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 미기재	응 시 표 **[2025년 제2회 전문분야(보건관리)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보건관리)	성명	(한글)
채용예정관서	안산우체국		(한자)
2025년 월 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고한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③ 채용예정관서: 안산우체국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가능

⑦ 정부수입인지: 8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미기재	채용예정관서	안산우체국	성명	

2.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관련분야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기업(○○과)	'00.00.00. ~ '00.00.00.	팀장	상세히 작성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기업(○○과)	'00.00.00. ~ '00.00.00.	팀장	상세히 작성	주 00시간 근무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사무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00.00.		

4. 가점요건				
한국사	인증등급	인증번호	시험일자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인)

※ 본인이 직접 자필 또는 워드작성가능하며 작성자는 자필로 이름과 서명 기재함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직종	한시임기제 8호(보건관리)	응시번호	※ 미기재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지원동기 및 귀하가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5. . . 작성자 (인/서명)

<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직종	한시임기제 8호(보건관리)	응시번호	※ 미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 14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하단의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기재

2025. . . 작성자 (인/서명)

<별지서식 제5호>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경력) 확인서

□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 포함)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위(급)	담당업무
1. ○○기업 (　　과)	23.0.0 ~ 24.0.0	00년00개월00일	과장	
2. (　　)				
3. (　　)				

<작성요령>

1.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2.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 등[업무분장내역(근무기간의 처음 및 마지막), 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 첨부
3.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4. 담당업무는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　　(인/서명)

<별지서식 제6호>

경 력 증 명 서

<table>
<tr><td colspan="7">제 2025 -　　호</td></tr>
<tr><td rowspan="3">인 적
사 항</td><td rowspan="2">성명</td><td>한 글</td><td></td><td rowspan="2">생년월일
(주민등록상)</td><td rowspan="2">.　.　.</td></tr>
<tr><td>한 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7">경 력
사 항</td><td colspan="2">근 무 기 간</td><td rowspan="2">근무부서</td><td colspan="2" rowspan="2">담당업무</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구체적으로 기재</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근무연한</td><td>년　　월</td><td colspan="2">최종직위 또는 직급</td><td colspan="2"></td></tr>
<tr><td>퇴직사유</td><td colspan="5"></td></tr>
<tr><td>용　　도</td><td colspan="5">우정직(기계, 전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출용</td></tr>
<tr><td>회사소재지</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또는 회사명(관인 또는 회사대표자인)

작성담당부서	
작성책임자	
작성담당자	
연락처	

※ 기재된 사항이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관발급용 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